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

제정 2008. 12. 01. 개정 2010. 07. 01.
개정 2012. 06. 18. 개정 2016. 10. 31.
개정 2022. 09. 19. 개정 2022. 12. 1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지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공정거래 자율준수 범위와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와이드(이하 "회사")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,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공정거래 자율준수"는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(이하 "자율준수"라 한다).
- ② "공정거래법"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령을 말한다.
- ③ "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"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,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(이하 "CP"라 한다).
- ④ "자율준수관리자"란 회사 임직원 중 CP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.
- ⑤ "자율준수협의회"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,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- ⑥ "담당부문"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 자체 점검을 실시, 감독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.
- ⑦ "CP 주관부서"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⑧ "자율준수편람"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써 공정거래 법규, CP 운영,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매뉴얼이다.

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제1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4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 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 조 제3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)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-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- ②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평가 및 운영현황 보고
- ③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
제6조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)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.

- ① 공정거래법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
- ②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, 출석 및 진술요구
- ③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
- ④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
제7조(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)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,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,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④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,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제2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

제8조(CP 주관부서의 역할)

- ①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,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과 관련되는 필요사항 권고, 자문
- ②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,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
- ③ 조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(징계위원회) 상정 및 시정요구
- ④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마찰 조정

제9조(자율준수협의회 의 구성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구성한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선임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- ③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해당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 단, 본 자율준수협회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제10조(자율준수협회의 운영 및 역할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,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 1.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, 자문
 2.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
 3. 위원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,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
 4. 각 위원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
 5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

제11조(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자율준수관리자 지원
 2.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 감독하여 소속 부서 CP 운영
 3. 소속 부서의 CP 교육 참여 독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법 위반 예방
 4.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
-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
 2.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
 3.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CP 주관부서에 결과 통보
 4.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통보

제3절 대표이사 및 임직원

제12조(대표이사의 역할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
제13조(임직원의 의무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.

제3장 CP의 운영

제1절 CP의 운영

제14조(자율준수 의지선언)

-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
제15조(CP의 운영)

- ① CP 주관부서는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, CP 활동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제16조(자율준수편람의 작성·배포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며,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.

제17조(교육프로그램 운영)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·안내한다.

- ① e-러닝 과정을 이용한 on-line 교육
- ② 각 부서별,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-line 교육
- ③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

제18조(문서관리)

- ① CP 주관부서 및 회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되어야 한다.

제19조(공정거래 모니터링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문 또는 부서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0조(CP 운영성과 평가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, 보완한다.
-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,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21조(상담 및 신고)

- ①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 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- ② 각 부서 공정거래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 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에 상담을 의뢰 해야한다.
- ③ 상담요청인은 상담 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先 실행한 후 상담을 요청 하여야 한다.
- ④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상담인은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- ⑥ 자율점검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상담인과 상담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면제하거나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.
- ⑦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⑧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 해야 한다.
- ⑨ 상담인 및 CP 주관부서는 상담을 의뢰한 자나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신고한 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신분 및 상담·신고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절 위반자에 대한 제재

제22조(징계사유) 취업규칙 제59조 및 상벌규정 제15조에 정한 사항을 따른다.

제23조(징계요구)

- ①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책임자가 징계 주관부서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부서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4조(징계양정기준) 상벌규정 제21조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제25조(특례)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6조(인센티브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 1. CP점검 우수 조직
 2.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
- ② 포상 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규의 상벌규정을 따르며,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